

拒絕不服審判請求書作成要領

朴 炳 汶
(辨 理 士)

1. 청구인은 당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은 자
2. 엄밀한 의미에서 피청구인은 특허청장이 되나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음.
3. 심판사건의 표시는 19××년 특허출원 제×호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 청구사건이라 표시함.
4. 발명의 명칭은 당해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발명의 명칭
5. 청구의 취지
원 사정을 파해한다.
19××년 특허출원 제×호는 이를 특허할 것으로 한다는 심결을 구함이라 표시함.
6. 청구이유란의 기재에 있어 유의할 점은
 - 1) 통상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볼것 같으면,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특허법 제 4 조 내지 동제 6 조 규정 및 동제 11 조 규정을 인용하는바 먼저 상거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 2) 먼저 거절사정된 출원의 발명의 요지를 기술하고
 - 3) 예를 들어 심사관이 특허법 제 6 조 규정을 들어 공지공용이나 출원전 반포된 간행물을 인용하였을 경우에 심사관이 지적한 인용대상물의 요지를 기술하고
 - 4) 상기 양자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요지를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그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개진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 내지 학설관계등을 첨부할 것

절첩문의 절첩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 제 1 도는 본 고안의 요부 분해 사시도
제 2 도는 본 고안의 실시 평면도
제 3 도는 본 고안 절첩상태의 평면도

<例 示>

불복 항고심판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갑 들 이
	주 소	도 군 면 리 번 지
	국 적	
심판사건의 표시		년도 특허 출원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 제조 방법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 방법		별지와 같음
특허법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1976. 10. 18.		
청구인		①
특허국장 귀하		
청구서류		
1. 청구서 부분 1 통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크기가 일정한 관상의 문을 수개 연결할 수 있는 절첩부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관상의 문 양 연부에 절첩부가 경첩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유연한 탄성재질로 된 연결구를 착설하여 사용할 때 수개의 문을 절첩하게 되면 상호 요동이 되어 자 문의 무게에 의하여 절첩부가 파손되면 일정하게 정돈된 상태로 절첩하기가 곤란하던 결점을 시정한 것으로서 양단부에 호상두부를 형성한 접동구의 좌우 양측에 절곡연편을 형성하고 그 단부에 원통형 접속대를 형성하여 절첩문 연결구의 일측부에 형성된 패삽구내에 원통 원통형 접

속대를 폐쇄하여 접동구의 좌우 양측에서 절첩문의 연결구가 용이하게 절첩할 수 있고 연결구의 일측부에 상하로 요설된 요입부에 호상두부가 협지되게 안출한 것으로서 이를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접동구(2)의 좌우 양측에 일체로 연편(3)(3')을 동일방향으로 절곡하여 원통형 접속대(4)(4')를 형성하고 접동구(2)와 원통형 접속대(4)(4')와의 사이에 삽입구(5)(5')를 각각 형성하여 연결구(7)(7') 일단부에 폐삽구(8)(8')를 굴삭한 측면을 절삭개구하여 폐지편(9)(9')이 형성되게 하고 접동구(2)의 원통형 접속대(4)(4')를 연결구(7)(7')의 폐삽구(8)(8')내에 폐삽하여 폐지편(9)(9')이 삽입구(5)(5')내에 삽입자재하게 폐설하면 원통형 접속대(4)(4')의 중앙부에 형성된 연편(11)에 호상두부(1)를 돌설하여 연결구(7)(7')의 일측면에 요설된 요입부(6)(6')에 협지되게 하여서 된 것이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10은 절첩문이다.

이와 같이 된 본 고안은 절첩문(10)의 양측단부에 연결구(7)(7')를 각각 착설하고 연결구(7)(7')의 폐삽구(8)(8')내에 접동구(2)의 원통형 접속대(4)(4')를 유착하여 절첩문(10)을 절첩작동하게 되면 연결구(7)(7')에 형성된 폐지편(9)(9')이 삽입구(5)(5')내에 삽입되면서 절첩하게 되고 연결구(7)(7')의 일측면에 요설된 요입부(6)(6')에 연편(11) 일단부에 돌설된 호상두부(1)의 양측면이 동시에 협지되어 절첩문(10)이 상호 정돈되게 절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접동구의 원통형 접속대가 절첩문 양단부에 착설된 연결구의 폐삽구내에 유착하여 절첩문을 절첩하게 될 때 연결구의 일측면에 요설된 요입부내에 연편일단부에 돌설된 호상두부가 양측으로 협지되어 절첩문이 일정하게 절첩할 수 있어 상호 요동됨이 없이 연결부를 보강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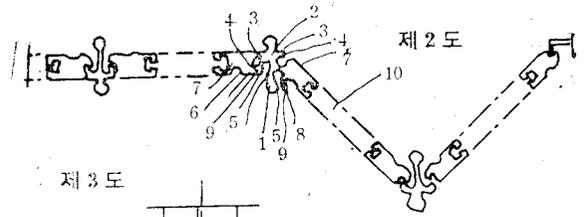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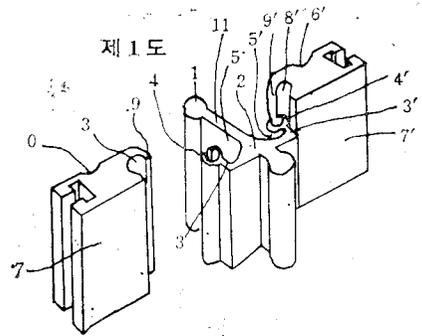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연결구(7)(7')에 형성된 폐삽구(8)(8')내에 접동구(2)의 원통형 접속대(4)(4')를 유착한 것에 있어서 접동구(2)의 연편(11) 일단부에 돌설된 호상두부(1)가 연결구(7)(7') 일측면에 요설된 요입부(9)(9')내에 협지할 수 있게 된 절첩문의 절첩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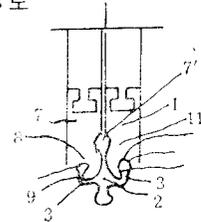
청구의 취지

원 사정을 파해한다.

1974년 특허출원 제 1684호는 이를 특허한 것으로 한



제 3도



다. 라는 심결을 구함.

청구의 이유

1. 본건 특허출원 제 74-1684호(이하 본원 특허라 한다)는 확산체를 이용한 완전 연소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1974. 3. 4자 출원되고, 1974. 11. 9자 거절사정된 것으로서, 그 발명의 요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문에 상술하고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노즐(1) 주연에 1차 공기 공급구(2)와 2차 공기 공급구(3)를 병설한 연소기에 있어서 3차 공기 공급구(4)에 연결된 선단에 공기 분출구(5)가 다수 천공된 다단식 확산체(6)를 장설하여 분사되는 화염을 확산시키고 동시에 재연소함을 특징으로 하는 확산체를 이용한 완전 연소장치에 관한 것인 바, 심사관은 원사정에서 1974. 8. 26자로 본원을 거절함에 있어, "본원 특허출원에 국내에 반포된 실용안공보 제 285호 공고번호 72-351호, 명칭 버어너의 2차 공기 공급장치(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특허법 제 6조 제 2항에 해당하여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지적하였음은 심사미진의 위법어인 것으로서 위사정은 다음 이유와 같이 마땅히 파

폐되어 본원은 특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2. 인용고안의 요지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같이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노즐(1)과 공기공급구(2)가 형성된 버어너를 장설한 보일러 연소실(3)에 있어서 연소실(3)의 저면 선단에 분사장공(5)(5') 천설된 분사구(6)(6')를 다단으로 형성한 2차 공기공급구(4)를 장설한 버어너의 2차 공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본원 특허출원인의 선원등록고안으로 본원 출원인은 이를 개량하여 노즐(1)에서 분사되는 화염은 화염의 분사속도로 인하여 1,2차 공기공급으로 완전 연소되지 못하므로 이를 3차 공기공급구(4)에 연결된 선단에 공기 분출구(5)가 다수 천설되게 내화벽돌(7)로 적층하여 된 다단식 확산체(6)에 분사되게 하여 사방팔방으로 확산되게 하므로 넓게 퍼져 화염의 운동방향을 급작도로 전환함으로써 화염중의 탄소균과 O₂균으로 떨어져 직선운동하던 것들이 확산 배합되어 3차 연소하여 완전 연소한다.

동시에 공기 분출구(5)로부터 분출된 3차 공기가 공기분출구(5)일대에 확산 작용을 하면서 부족한 공기를 공급하여 재연소를 촉진하게 되어 완전 연소를 하므로서 화상내의 온도를 높여 열효율을 증대하고, 화염이 사방팔방으로 넓게 퍼지므로 화염표면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되므로 대류, 전도열보다 10배나 전도율이 높은 복사열 발산(면적이 2배 이상 커지므로)이 배증되므로 결정적인 열효율이 크게 증가된다.

(열효율 증가의 대부분의 요인이 된다)

3. 원사정에서는 1974. 10. 26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10. 30자 자진 보정서에 출원인의 선원등록고안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더우기 본원의 작용효과를 입증하는 국립공업표준시험소의 시험성적서(중래의 열효율이 76.3%이던 것이 89.3%까지 향상됨)까지 별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심사하지 않았음은 심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사정에서는 본원의 요지를 극해하여 특허법 제 6조 제 2항에 해당되어 특허 받을 수 없다는 심사관의 판단은 사실인정을 그르치고 출원인 선등록고안을 개량한 진보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심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본원은 마땅히 특허사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구의 취지

원사정을 파쇄한다.

74년 상표등록 출원 제2916호는 이를 등록 사정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심결을 구함.

청구의 이유

1. 1974년 상표등록 출원 제2916호(이하 본원 상표라 한다)는 일문과 영문으로 EARTH(어스)라 표시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제18류 주방용품과 일용품으로 하여 1974. 5. 10출원, 1975. 8. 30자 거절사정된 것인 바, 심사관은 다음 이유와 같이 상표법 제 9조 제 1항 제 7호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실인정을 그릇친 심리미진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원사정은 파쇄되어야 하며 본원 상표는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원사정에 있어 심사관은 1975. 8. 30자 거절이유에서 본원상표는 타인의 등록상표 제9797호와 관념이 유사한 것으로 상표법 제 9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절 이유이나, 등록상표 제9797호(이하 인용상표라 함)는 국문으로 아트라스라 칭사하여 그 아래 지구 도형을 하고 지구도형 중앙부에 영문으로 ATLAS라 표시된 상표인 바, 상표법상 상표라함은 자타상품을 식별하고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면 따라서 상표 자체의 구성은 물론 거래사회의 정황등 제반 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서

3. 본원 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검토 하건대

1) 양자의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대지 또는 지구란 뜻인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지도책 또는 도해(圖解)란 뜻으로 양자의 관념이 전혀 상이하고

2) 양자의 구성과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일문과 영문으로 각각 EARTH(어스)라 표시된 상표로 “어스”라 칭하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국문으로 아트라스라하고 그 아래 지구도형을하고 도형 중앙부에 영문게으로 ATLAS라 표시된 상표로 아트리스라 칭하는 것으로 양상표의 구성 및 칭호에 있어서도 전혀 상이한 것입니다.

즉,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양자의 상표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야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원 상표는 인용상표와는 상술한 바와 같이 칭호, 외관 및 관념중 어느 하나도 유사하지 않는 전혀 상이한 상표로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야기하지 않는 상표임은 갑 제 1호증인 의견서에 충분히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이를 배척하여 사실인정을 그릇 해석할 심리미진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원사정은 마땅히 파쇄되고 본원 상표는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